

사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- 가. 제 출 : 2007. 11. 27(사천시장)
- 나. 회 부 : 2007. 11. 27(산업건설위원회 회부 의안번호 제86호)
- 다. 상 정 : 2007. 12. 5(제119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)

2. 제안설명요지(녹지공원과장 : 문태근)

가. 주요내용

- 도시녹화와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위하여 가로수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

나. 주요내용

- 가로수 조성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토록 함(안 제5조)
- 가로수 갱신, 보식, 가지치기, 외과수술 및 점검 등 가로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2조 내지 제16조)
- 가로수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주민들에게 관리에 관한 홍보와 계도 실시로 주민참여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0조)
- 가로수와 관련 시설물이 인위적인 사고로 인한 피해의 경우 훼손자 부담금을 타공사 등으로 인한 이식, 제거의 경우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토록 규정함(안 제22조 내지 제24조)
- 가로수 대장 비치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27조)

다. 관계법령

-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1조

3. 검토보고요지(전문위원 : 조영옥)

- 본 안건은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녹화와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위하여 가로수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임
- 2006. 8. 4. 관련 법령인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 시행되면서 산림청의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코자 함
-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“3” 과 동일함
-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여도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: 없음